

#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3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2월 17일  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집회·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‘사전허가제’는 금지되고 있는바, 2024년 10월 16일 박중화 의원 외 29명이 공동 발의한 「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」(의안번호 2232) 중 ‘제한·금지통고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 검토도’를 ‘명확한 기준 마련이’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건의안 본문 중 ‘제한·금지통고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 검토도’를 ‘명확한 기준 마련이’로 수정함.

#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

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본문 중 “제한·금지통고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 검토도”를 “명확한 기준 마련이”로 한다.

## 〈 수정안 대비표 〉

원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</p> <p>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도로관리권을 침범하거나 교통소통에 막대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무분별하고 불법적 시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.</p> <p>실례로 송례문 부영빌딩 앞 도로상에 집회 천막 2동을 설치하여 도로관리권을 침범한 사례(23. 2. 18. ~ 27)와 3천여 명이 세종대로 -&gt; 서울대병원 방면으로 행진 중 30여 분간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방 차로를 점거하여(23. 5. 17.)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사례 등 일반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권리인 ‘일상권’을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</p> <p>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, 평균 일출시각(06:30 경) 등을 고려하여 집회 시위 금지시간을 ‘0시~6시’로 명확화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.</p> <p>또한, 평일 출퇴근 시간대(06:00~10:00 및 17:00~20:00)에 주요도로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명백히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교통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<b>제한</b>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</p> <p>(원안과 같음)</p> <p>(원안과 같음)</p> <p>(원안과 같음)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명확</b></p>

원 안	수 정 안
<p><u>금지통고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 검토도</u> 필요합니다.</p> <p>합법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,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며, 집회 시 과도한 집회 소음과 심야 집회 및 무단 노숙 등에 불법 행위로부터 시민의 일상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</p> <p>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(행정안전부, 경찰청)에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·건의합니다.</p> <p>하나, 평균 일출시각 등을 고려하여 집회 시위 금지시간을 ‘0시~6시’로 명확화 하도록 집시법 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)을 개정함.</p> <p>둘,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·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개최시간, 행진의 경로, 차로 이용여부,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 등 주요도로 상의 집회·시위 제한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집시법 제12조(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)제1항을 개정함.</p>	<p><u>한 기준마련이</u> -----.</p> <p>(원안과 같음)</p> <p>(원안과 같음)</p> <p>(원안과 같음)</p> <p>(원안과 같음)</p>

#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 개정 촉구 건의안

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도로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교통소통에 막대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무분별하고 불법적 시위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.

실례로 송례문 부영빌딩 앞 도로상에 집회 천막 2동을 설치하여 도로관리권을 침해한 사례(23. 2. 18. ~ 27)와 3천여 명이 세종대로 -> 서울대병원 방향으로 행진 중 30여 분간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방 차로를 점거하여(23. 5. 17.) 상당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사례 등 일반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권리인 ‘일상권’을 침해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.

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, 평균 일출시각(06:30 경) 등을 고려하여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‘0시~6시’로 명확화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.

또한, 평일 출퇴근 시간대(06:00~10:00 및 17:00~20:00)에 주요도로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명백히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교통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합니다.

합법적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,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며, 집회 시 과도한 집회 소음과 심야 집회 및 무단 노숙 등에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의 일상은 보호되어야 합니다.

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(행정안전부, 경찰청)에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」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·건의합니다.

하나, 평균 일출시각 등을 고려하여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'0시~6시'로 명확화하도록 집시법 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)을 개정함.

둘,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·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개최시간, 행진의 경로, 차로 이용여부,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 등 주요도로 상의 집회·시위 제한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집시법 제12조(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)제1항을 개정함.

2024. 11. 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